



☎ 463-81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3번길 9 FAX : 02-566-6426

( 담당 이동욱, 02-1577-5500 )

CMS업무팀 - 492

2015. 7. 22.

수 신 CMS 이용기관 대표자

참 조

제 목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2단계 실시 관련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이체 계좌변경 및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 실시(2단계)와 관련하여 CMS 이용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종류〉

구 분	서비스	주요내용	실시시기
1단계	자동이체 조회·해지	고객 명의로 전체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조회 및 해지	2015. 7. 1
2단계	자동이체 계좌변경	고객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을 신청한 계좌를 변경	2015. 10. 30 (예정)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신청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내용을 열람	2015. 10월 말 (예정)

- 붙 임 : 1.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1부.  
2. 출금동의 증빙자료(EI13) 전산설계서 1부.  
3. 출금동의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1부. 끝.



금융결제원 e사업실장 

(붙임 1)

---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2단계 실시 관련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

**2015. 7.**

금융결제원 e사업실(CMS업무팀)

# 1 개 요

자동이체 계좌변경 및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서비스 실시와 관련하여 이용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 및 고객민원 최소화를 위한 조치사항을 안내함.

## 1.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란?

-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는 자동이체 서비스의 안전성과 대고객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고객이 여러 금융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웹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일괄 조회하고, 동 자동이체정보를 해지 또는 변경하거나 고객이 이용기관에 신청한 자동이체 증빙자료(서면, ARS, 녹취 등)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 2. 서비스 종류별 실시일정 (CMS 이용기관)

구 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실시일정
1단계	자동이체 조회 및 해지	고객이 본인 명의로 전체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일괄조회 하고 필요시 해지	2015. 7. 1~
2단계	자동이체 계좌 변경	고객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을 신청한 계좌를 변경	2015. 10. 30 ~ (본격실시 예정)
	출금동의 증빙자료 보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신청 시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내용을 열람	2015. 10월 말~ (예 정)

### 3. 용어 설명

#### □ 자동이체

- 수취인(이용기관, 채권자)의 출금요청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급인(고객, 채무자)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취인 계좌에 입금하는 서비스
- 고객이 이용기관과의 서비스 이용계약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고객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용기관 계좌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로서 지로 자동이체, CMS 자동이체, 펌뱅킹이 있음.

#### □ 출금동의 증빙자료

- 고객의 자동이체 출금 동의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로 서면(자동이체 신청서), 녹취, ARS, 전자문서(공인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가 있음.

#### □ 자동이체 정보

- 고객이 이용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청한 자동이체와 관련된 정보로 아래 정보를 포함

자동이체 등록정보		내용
K e y 주)	자동이체 종류	CMS, 지로 자동이체, 펌뱅킹
	이용기관코드	이용기관의 CMS 기관코드(10자리)
	납부자번호	이용기관에서 부여한 고객의 고유 번호
	금융기관코드	금융기관 구분코드
	계좌번호	자동이체가 등록된 계좌번호
이용기관명		이용기관의 상호
계좌주명		자동이체가 등록된 계좌의 예금주

주) 자동이체정보를 구분하고, 자동이체 증빙자료와 자동이체정보를 매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값

## 2 자동이체 계좌변경서비스

### 1. 서비스 개요

- 고객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또는 참가기관(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

### 2. 서비스 이용방법

- 제공 서비스 : 자동이체 계좌변경 및 계좌변경 취소요청(당일)
- 서비스 제공시간 : 영업일 09:00~17:00
- 서비스 제공범위 : 동일 자동이체 종류 내에서 변경 처리
  - CMS ⇒ 지로자동이체 계좌변경 불가, 펌뱅킹 ⇒ CMS로 계좌변경 불가
- 계좌변경 소요기간 : 5영업일 이내(CMS는 4영업일 소요)
- 이용 방법
  - 고객이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본인(계좌주)의 실명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 고객은 자동이체정보를 조회하고, 조회된 내역 중 선택하여 계좌변경 신청(일괄변경 가능)
    - \* 고객의 계좌변경 신청 시 통합관리시스템은 변경 후 계좌의 유효성을 금융기관에 확인
  - 고객 신청 시 참가기관으로 변경요청이 전달되고, 참가기관은 변경 내역을 EB11을 통해 이용기관에 변경내역 전송
  - 이용기관은 기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정보를 해지하고, 고객이 요청한 변경 후 계좌를 신규 등록 처리한 후 불능내역은 EB12에 수록하여 CMS로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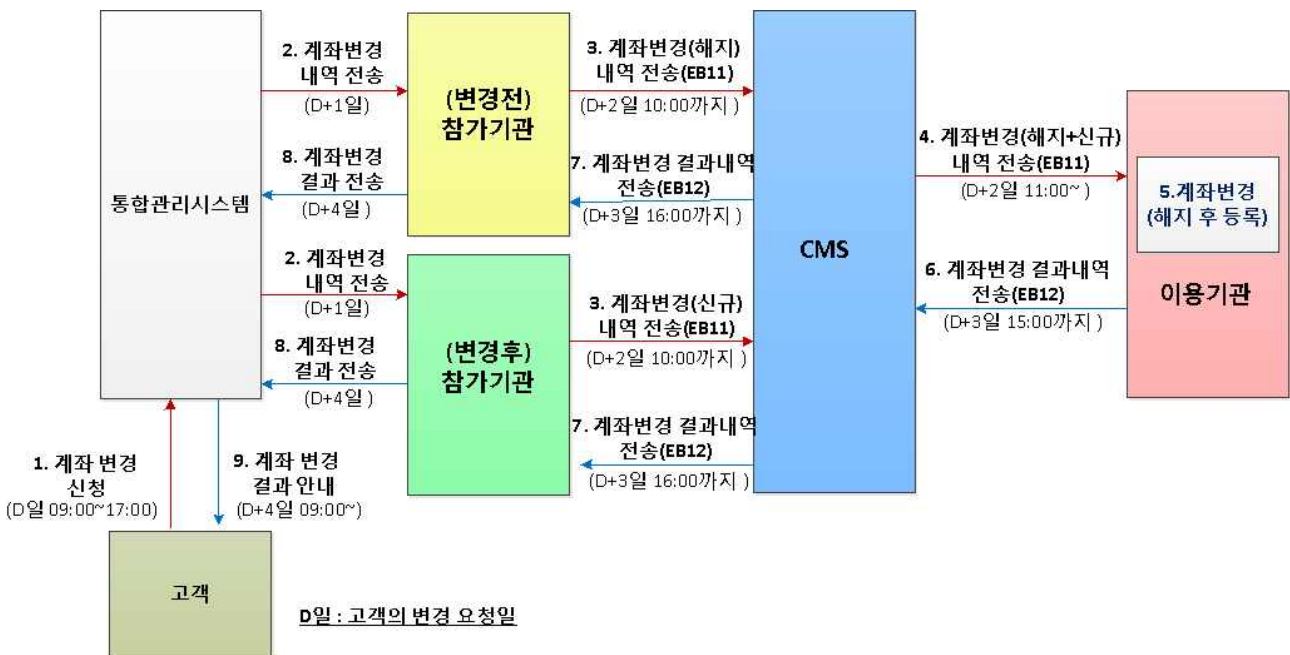
### 3. 이용기관 조치사항

#### 가. 참가기관 접수 출금이체 신청내역(EB11) 변경사항 적용 및 파일 처리

##### □ 개요

- 고객이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신청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내역은 참가기관 접수 출금이체 신청내역(EB11)에 수록되므로 이용기관은 동 파일을 수신하여 변경처리

#### <계좌변경 서비스 처리흐름>



1. 고객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계좌변경을 요청(D일 09:00~17:00)
2. 통합관리시스템이 계좌변경 내역을 참가기관에 전송(D+1일)
3. 참가기관은 계좌변경 내역을 CMS에 전송(D+2일 10:00까지)
4. CMS는 이용기관에 계좌변경 내역(신규+해지) 전송(D+2일 11:00부터)
5. 이용기관은 계좌변경내역을 수신하여 변경처리(D+2일)
6. 이용기관은 계좌변경 결과내역을 전송(D+3일 15:00까지)
7. CMS는 계좌변경 결과내역을 참가기관에 전송(D+3일 16:00부터)
8. 참가기관은 계좌변경 결과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D+4일)
9. 통합관리시스템은 계좌변경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D+4일 09:00부터)

□ 계좌변경 처리를 위한 전산 조치 사항

○ (취급점코드 신설) 이용기관이 계좌변경 처리를 위한 해지 및 신규와 단순 해지 및 신규를 구분할 수 있도록 취급점코드 신설

- 대상 파일 : 출금이체 신청내역 EB11 (참가기관⇒이용기관)  
출금이체 신청내역 처리결과 EB12 (이용기관⇒참가기관)

- 신설 취급점코드 : CHNG (의미 : Change)

- 적용일 : 2015. 10. 1부터 (EB111001)

\* (별첨1) CMS 전산설계서 변경내역 참조

○ 참가기관의 계좌변경 내역 전송 방법

- 계좌변경은 납부자번호는 동일하지만 계좌번호가 상이한 해지 및 신규 set로 구성(타 은행계좌 및 동행 내 타 계좌로 변경 가능)

- CMS는 변경을 위한 해지 및 신규를 set로 동일날짜 EB11파일 취급점코드에 CHNG를 수록하여 이용기관에 전송

<참가기관의 EB11 수록 예시>

구분	신청구분	취급점코드
계좌변경 시 해지(변경 전 계좌)내역	3	<u>CHNG</u>
계좌변경 시 신규(변경 후 계좌)내역	1	<u>CHNG</u>
고객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지 시	3	<u>CNCL</u>
고객이 참가기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 시	3	숫자4자리
참가기관이 1년 이상 출금요청이 없어 임의해지 시	7	숫자4자리

\* EB11에 신청구분 코드는 변동없음(신규 1, 해지 3, 임의해지 7)

○ 이용기관의 계좌변경 내역 처리방법

- 이용기관은 계좌변경 내역에 대해 정상처리 또는 모두 불능처리

- 계좌변경은 납부자번호가 동일한 해지 및 신규가 set로 구성되므로 이용기관은 계좌변경 내역을 정상처리하거나 모두 불능처리 해야 함

- 이용기관이 계좌변경 내역을 불능처리하는 경우 EB12 파일에 해지 및 신규를 set로 모두 수록하여 결제원에 전송

### 이용기관의 계좌변경 내역 처리방법 예시

\* EB110709에 납부자번호 12345인 고객의 **해지(3)** 및 **신규(1)** 내역 수신 시

- 이용기관이 고객의 계좌변경을 **정상처리** 하는 경우

⇒ **EB120709**에 납부자번호 12345와 **관련된 계좌변경 내역 수록 X**

\* EB12는 EB11에 대한 불능내역을 수록하여 전송하는 파일임

- 이용기관이 고객의 계좌변경을 **불능처리**하는 경우

⇒ **EB120709**에 납부자번호 12345인 **해지(3)** 및 **신규(1)** 내역을 **불능코드를 포함하여 모두 수록**

<이용기관 입력 불능코드>

코 드	내 용	처리불능사유
A013	납부자번호 상이 또는 없음	출금이체 신청내역(Eb11)의 납부자번호가 이용기관 고객원장에 없거나 해당 납부 자가 자사 고객이 아닌 경우
A016	이중신청	이용기관의 고객원장에 등록된 계좌번호 및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재신청하는 경우
A016	기타오류	기타 정의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오류

- 이용기관이 계좌변경 처리결과를 해지 및 신규 set로 **모두 수록  
하지 않는 경우** CMS는 EB12 파일 전체를 오류처리하며 이용기  
관은 마감시한까지 **정정하여 파일을 전송해야 함.**

\* CMS는 이용기관이 EB12 파일을 정정하여 송신하지 않는 경우 EB12 파일에  
수록된 계좌변경 내역(신규 및 해지)은 **모두 불능**으로 참가기관에 전송

### o 출금이체 신청내역(EB11)의 적기 수신 및 처리

- 이용기관이 EB11에 수록된 변경내역 미처리 시 계좌변경이 실패한  
고객으로부터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EB11을 정해진 시각까지  
수신하여 처리

#### <출금이체 신청파일 표준 송수신 시각>

구 분	파일명	송신흐름	전송표준시각	비 고
출금이체 신청내역	EB11MMDD	결제원 ⇒ 이용기관	D+1 11:00부터	
출금이체 신청결과내역	EB12MMDD	이용기관 ⇒ 결제원	D+2 15:00까지	신청등록 불능분

\* D일은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일이며 파일명 날짜임(MMDD)

## 나. 적절한 고객민원 응대 및 처리

### □ 고객 민원 발생 가능

- 고객이 출금일에 임박하여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이용기관은 기존 계좌로 출금을 요청함에 따라 연체 및 민원 발생 가능
- 고객이 다수 이용기관의 자동이체 내역을 일괄로 변경요청 하였으나 일부 이용기관만 불능처리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민원 발생 가능

### □ 민원응대 및 처리방법

- 민원담당자 또는 고객센터 직원이 계좌변경 서비스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고객민원에 적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 고객은 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이용기관의 민원담당자 연락처를 조회하여 민원을 제기하므로 담당자 변경 시 담당자변경 처리

#### 담당자정보 변경 방법

- CMS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http://www.cmsedi.or.kr))에서 로그인 후 상단의 My Page ⇒ 기본정보관리 ⇒ CMS담당자정보에서 변경처리
- 담당자정보 변경신청서(별첨3) 작성 후 FAX(02-566-6426) 전송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를 통한 변경
  - ☎ 02-1577-5500 ⇒ (3) ⇒ (1) ⇒ (0) 누른 후 변경요청

## 다. 추진 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용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계좌변경 서비스 사전 실시(9.30~)					
본격 실시(10.30~)					

## 4. 이용기관의 EB11 파일 수신을 제고를 위한 변경사항 안내

- 이용기관이 계좌변경 내역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기관의 EB11 파일 수신을 제고를 위한 변경사항 안내
- 이용기관 앞 매 영업일 EB11 파일 송신
  - (현행) 고객이 참가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자동이체 신규 및 해지를 신청하는 등 대상건수가 있는 경우에만 EB11 파일 전송
  - (변경) 결제원은 매 영업일 전체 이용기관 앞 EB11 파일 송신
    - \* EB11 대상건수가 없는 경우는 0건을 전송(Header 및 Trailer만 전송)
- EB11 파일 관련 이메일 통지 기능 제공
  - 이용기관의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EB11 파일 송신 시 이용기관 담당자 앞 관련 정보를 이메일 통지
  - 통지 대상 : CMS 실시 이용기관 중 EB11 건수가 1건 이상인 기관
  - 통지 정보
    - 공통정보 : 파일명, 수신 마감시한 등
    - 이용기관별 정보 : 기관명, 기관코드, 총 건수(신규, 해지, 임의해지)
  - 통지 방법 : 결제원에 등록된 이용기관의 업무담당자 앞 이메일 전송

### [금융결제원CMS] EB110716 파일 안내(기관코드: 9911123456)

안녕하세요. 금융결제원 CMS 담당자입니다.

홍길동주식회사(기관코드 : 9911123456)의 EB110716 파일정보를 안내해드리오니 등 파일을 마감시한까지 수신하여 처리 부탁드립니다.

- 대상건수 : 총 10건(신규 5건, 해지 3건, 임의해지 2건)
- 수신 마감시한 : 2015.07.20 15:00까지  
(EB11 파일 중 불능 처리해야 할 내역은 EB120716로 생성하여 마감시한까지 전송)

\* 본 메일은 이용기관의 CMS 업무 담당자에게 전송됩니다.

업무담당자 변경 시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이용기관 담당자 정보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일 : 2015. 9. 1 예정

## 1. 서비스 개요

- 이용기관이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고, 고객이 해당 증빙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

## 2. 이용기관의 출금동의 증빙자료 전송 법적근거 및 종류

- 법적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意的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意的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 동意的 방법)】**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출금동의 증빙자료 종류

- 서 면
- 녹 취
-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이하 ‘ARS’ )
- 전자문서(공인전자서명한 문서 및 일반 전자서명문서)
- \* (별첨) 출금동의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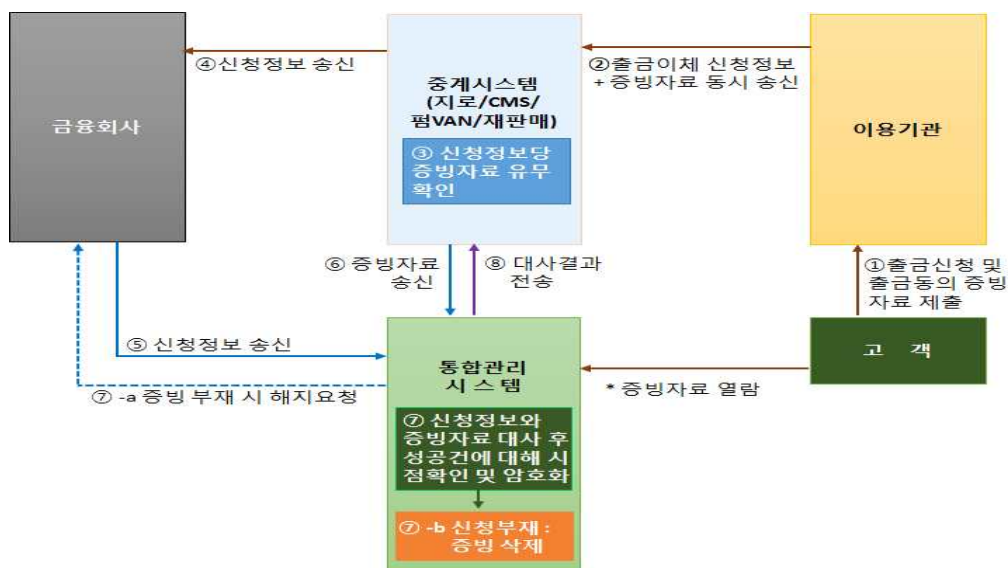
### 3. 서비스 이용방법

□ 제공 서비스

기 능	주요 내용
전 달	○ 이용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납부자에게 받은 “출금동의 증빙자료(이하 증빙자료)” 를 출금이체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달 * 녹취, ARS, 이미지, 전자문서 등, ** 지로, CMS, 펴VAN, 펴재판매기관 등
보 관	○ 이용기관이 전달한 동의자료를 변경되지 않도록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보관 (기 등록분에 해당하는 동의자료는 보관대상에서 제외)
열 램	○ 고객 또는 이용기관이 증빙자료 확인 요청 시 보관중인 동의자료를 열람
대 사	○ 금융회사에서 송신한 출금이체 등록정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의 존재유무 확인

□ 서비스 제공시간 : 영업일 09:00~17:00

□ 서비스 처리 흐름



## 4. 이용기관 조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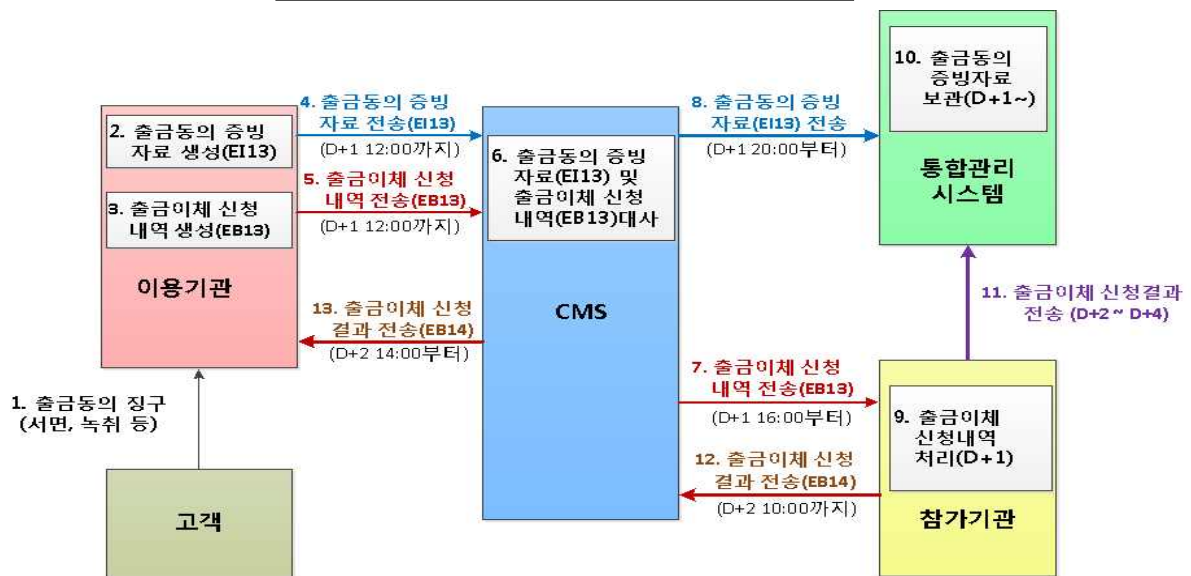
### 가. 출금동의 증빙자료 파일(EI13) 전송을 위한 프로세스 개발

#### □ 개요

- 이용기관은 출금이체 신청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출금동의 증빙자료 파일(EI13)로 생성하여 결제원에 전송하고 전송완료 후 출금이체 신청내역(EB13) 전송

\* CMS 실시간 계좌등록 서비스 관련 전산설계서 및 일정은 별도 안내

#### <출금동의 증빙자료 파일 처리흐름>



1.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서면 및 녹취 등의 방법으로 출금동의 징구
2. 이용기관은 징구한 출금동의를 바탕으로 EI13(출금동의 증빙자료) 생성
3. 이용기관은 징구한 출금동의를 바탕으로 EB13(출금이체 신청내역) 생성
4. 이용기관은 EI13을 D+1 12:00까지 전송
5. 이용기관은 EB13을 D+1 12:00까지 전송
- \* 이용기관은 EI13을 먼저 송신한 후 EB13을 전송해야 함
6. CMS는 이용기관이 전송한 EI13 및 EB13 대사(검증)
7. CMS는 EI13이 존재하는 EB13만 참가기관으로 D+1 16:00부터 전송
8. CMS는 EI13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D+1 20:00부터 전송
9. 참가기관은 계좌번호 등이 유효한 EB13 처리
10. 통합관리시스템은 EI13을 수신하여 암호화하여 보관
11. 참가기관은 처리한 EB13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D+2일부터 전송
12. 참가기관은 EB14(출금이체 신청결과)를 CMS에 전송
13. CMS는 EB14를 이용기관에게 전송

□ 출금동의 증빙자료 징구 및 보관

-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은행명, 계좌번호 등 필수정보를 포함하여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징구
  - 이용기관은 신규 고객과 계약 시 출금동의 증빙자료 징구
  - 기존 고객이 계좌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좌이체로 납부수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출금동의 증빙자료 징구
- 이용기관은 고객이 출금이체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증빙자료 보관

**CMS 이용약관 제24조(납부자의 출금이체신청서 접수절차 등)**

① 직접접수기관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출금이체신청서(출금이체약관 동의서 포함)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자가 출금이체 신청을 해지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출금이체신청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출금동의 증빙자료 파일(EI13) 및 출금이체 신청내역(EB13) 생성·전송

-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서면, 녹취 등의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전송가능한 형태로 변환하여 출금동의 증빙자료 파일(EI13) 생성
  - 증빙자료 종류별 파일형태 및 용량을 고려하여 EI13파일 생성
- \* (별첨1) 전산설계서 및 (별첨2)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참조

**증빙자료 형태 및 용량**

구분		파일형태	최대용량(건당)
서면		JPG, JPEG, GIF, TIF	300Kb 이내
녹취		MP3, WAV 등 음성파일	200Kb 이내
ARS		MP3, WAV 등 음성파일	200Kb 이내
전자문서	일반전자문서	JPG, JPEG, GIF, TIF	300Kb 이내
	공인전자문서	DER	5Kb 이내

- 기존 CMS 파일과는 달리 증빙자료 파일의 크기는 가변적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프로그램 개발
- \* 예) EB13은 고객 1명당 데이터크기가 120byte로 고정되어 있지만 EI13은 300Kbyte 이내에서 변동

- 이용기관은 EI13에 수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동일날짜 EB13에 신규 신청내역을 포함하여 생성
    - CMS는 EI13 및 EB13의 신청일(파일명의 MMDD)이 동일한 파일을 대사하여 EI13이 없는 EB13 신규 신청내역은 센터에서 불능처리
      - \* 예) CMS는 EI130715과 EB130715의 신규 신청내역을 대사
  - 이용기관은 EI13을 먼저 전송하고 완료 후 EB13 전송
    - CMS는 이용기관이 신규 신청내역이 수록된 EB13을 전송하였지만 EI13전송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EB13을 전체 불능처리
- ⇒ 이용기관은 신규 고객 출금이체 신청 시 EI13을 EB13보다 먼저 전송할 수 있도록 내부 프로세스 구현

**이용기관의 EB13 및 EI13 처리방법 예시**

□ EB130716에 총 10건이 수록된 경우(신규 5건, 해지 5건)

- 이용기관은 EB130716에 수록된 신규 5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EI130716으로 생성하여 전송해야 함
  - EI130716에 EB130716에 수록된 신규 4건만 수록한 경우
    - ⇒ 결제원은 EI130716에 수록되지 않은 신규 1건을 불능처리하고 참가기관에 총 9건(신규 4건, 해지 5건)의 EB130716 전송
  - 이용기관이 EB130716을 EI130716보다 먼저 전송한 경우
    - ⇒ 결제원은 EB130716에 수록된 모든 내역(신규 및 해지)을 불능처리하고 참가기관에 EB130716 미 전송
- \* 이용기관이 EB130716 및 EI130716 송신 마감시한인 7.17일 12:00까지 EI13을 먼저 전송하고 EB13을 재전송 하는 경우 정상처리

**<출금이체 신청파일 표준 송수신 시각>**

구 분	파일명	송신흐름	전송표준시각	비 고
출금이체 신청내역	EB13MMDD	이용기관 ⇒ 결제원	D+1 12:00까지	
출금이체 신청결과내역	EB14MMDD	결제원 ⇒ 이용기관	D+2 14:00부터	신청등록 불능분
출금동의 증빙자료	EI13MMDD	이용기관 ⇒ 결제원	D+1 12:00까지	

\* D일은 고객의 출금이체 신청일이며 파일명 날짜임(MMDD)

□ CMS 전산설계서 변경사항 반영

- (기존 취급점코드 적용대상 추가) 통합관리시스템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증빙자료와 참가기관이 전송한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대사하여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출금이체 신청내역은 참가기관 앞 해지요청
  - 대상 파일 : 출금이체 신청내역 EB11 (참가기관⇒이용기관)  
출금이체 신청내역 처리결과 EB12 (이용기관⇒참가기관)
  - 대상 취급점코드 : CNCL (의미 : Cance)
  - 신청구분코드 : 7 (임의해지)
  - 적용일 : 2015. 10월 ~
  - \* (별첨2) CMS 불능코드 참조

<참가기관의 EB11 수록 예시>

구 분	신청구분	취급점코드
계좌변경 시 해지(변경 전 계좌)내역	3	<u>CHNG</u>
계좌변경 시 신규(변경 후 계좌)내역	1	<u>CHNG</u>
고객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해지 시	3	<u>CNCL</u>
고객이 참가기관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 시	3	숫자4자리
참가기관이 1년 이상 출금요청이 없어 임의해지 시	7	숫자4자리
통합관리시스템이 증빙자료 부재로 임의해지 시	7	<u>CNCL</u>

○ (불능코드 신설)

- CMS는 이용기관이 증빙자료를 수록하지 않은 출금이체 신청내역을 전송한 경우 해당 신규 내역을 불능코드를 수록하여 전송
  - 대상 파일 : 출금이체 신청내역 처리결과 EB14 (참가기관⇒이용기관)
  - 대상 불능코드 : 0078 (출금동의 증빙자료 미전송)
- 통합관리시스템이 증빙자료 부재로 임의해지한 고객에 대해 이용기관이 출금요청 시 참가기관은 불능코드를 수록하여 전송
  - 대상 파일 : 출금의뢰내역 결과 EB22, EC22 (참가기관⇒이용기관)
  - 대상 불능코드 : 0020 (출금동의 증빙자료 부재로 인한 임의해지)
- 적용일 : 2015. 10월 ~

## 나. 적절한 고객민원 응대 및 처리

### □ 고객 민원 발생 가능

- 이용기관이 실수로 타 고객의 증빙자료를 전송하는 경우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출금동의를 열람한 고객으로부터 민원 발생
- 이용기관이 납기일 전에 증빙자료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출금이체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연체 발생 등에 따른 민원 발생

### □ 민원응대 및 처리방법

- 이용기관은 고객별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보관·전송하고
- 이용기관은 기존 대비 최대 2,500배 크기의 출금동의 증빙자료 전송이 필요하므로 내부 시스템 용량 및 전용선 속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원활하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 다. 추진 일정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용기관 프로그램 개발	[Red bar spanning 7월, 8월, 9월, 10월]				
테스트 실시		[Green bar spanning 8월, 9월, 10월]			
실시 (예정)				[Blue bar spanning 10월, 11월]	

주1) 이용기관별 테스트 일정 및 진행방법은 8월 초 별도 안내

(별첨 1)

## CMS 전산설계서 변경내역

□ 은행 및 기관접수 (EB11, EB12, EB13, EB14) Data Record

항번	항 목	MODE	LENGTH	MAC	비 고
1	Record 구분	A	1		Data Record 식별부호 "R"
2	Data 일련번호	N	8		"00000001" ~
3	기관코드	AN	10		이용기관식별코드
4	신청일자	AN	6		납부자의 서비스 신청일자
5	신청구분	AN	1		신규:"1", 해지:"3", 임의해지:"7"
6	납부자번호	AN	20		이용기관에서 부여한 납부자식별번호 *고유한 번호로 두 개 이상의 계좌에 동일한 납부자번호를 사용할 수 없음
7	참가기관(은행)점코드	AN	7		•점코드관리 불가능시 참가기관(은행) 코드 3자리만 SET •나머지 4자리는 "0"로 SET
8	지정출금계좌번호	AN	16	*	※ "-"는 생략
9	예금주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AN	16		•개인 : "생년월일"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해지(신청구분"3")는 SPACE 처리가능
10	<b>취급점코드</b>	AN	4		•EB11 - 신청서접수점코드 •EB13 - SPACE
11	자금종류	AN	2		출금자금의 종류
12	처리결과	결과코드	A	1	SPACE
		불능코드	AN	4	SPACE
13	FILLER	AN	1		SPACE
14	전화번호(핸드폰)	AN	12		"-"는 생략
15	FILLER	AN	11		SPACE

(주) "5. 신청구분" : 참가기관(은행)접수(EB11) 내역의 해지("3")와 임의해지("7") 구분

- 참가기관이 **임의해지**한 고객 원장은 이용기관이 동일 납부자번호로 재등록 요청시 **정상처리**  
**해지** 한 고객 원장은 이용기관이 동일 납부자번호로 재등록 요청시 **오류처리**

"10.취급점코드" : 참가기관(은행)접수(EB11) 내역 중

- 고객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해지한 내역은 취급점코드에 **CNCL** 수록
- 고객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변경을 요청한 내역은 취급점코드에 **CHNG** 수록

\* CMS 전산설계서 전문은 CMS 홈페이지(www.cmsedi.or.kr) 자료실 참조

# CMS 불능코드

## 1 참가기관(은행)입력 불능코드

코 드	내 용	처 리 불 능 사 유
0012	계좌번호 오류 또는 계좌번호 없음	계좌번호체계 오류(계좌번호길이 부적합, Check Digit 불일치 등), 계좌번호 없음, 준비계좌
0014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오류	출금이체신청(EB13) 및 입금이체(EB31)시 계좌번호는 정당하나 이용기 관이 실명번호 검증을 요구한 건에 대하여 동번호가 원장내용과 일치 하지 않는 경우
0015	계정과목 오류	계좌번호는 있으나 CMS업무에서 지정한 입출금과목이 아닌 경우 (보통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당좌예금,기업자유예금,가계당좌예금)
0017	출금이체 미신청계좌	①출금이체(EB21, EC21)에서 출금이체신청등록원장에 해당 계좌번호 및 납부자번호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②출금이체신청내역(EB13)의 신청구분이 해지신청("3") 또는 임의해지 신청("7")일 때 출금이체신청등록원장에 해당 계좌번호 및 납부자번 호가 없거나 상이한 경우.
0018	출금이체신청 임의해지	참가기관(은행)이 1년 이상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 신청에 대해 임의 해지한 경우
0019	출금이체신청 참가기관 (은행) 등 해지	납부자가 참가기관(은행) 또는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출 금이체 신청을 해지한 경우
<b>0020</b>	<b>출금동의 증빙자료 부 재로 인한 임의해지</b>	<b>납부자의 출금동의 증빙자료 부재로 참가기관이 임의해지한 경우</b>
0021	잔액 또는 지불가능 잔액 부족	①지불가능잔액부족, 대월한도초과, 출금한도초과, 미결제타점권 존재 ②부분출금시 잔액이 140원 미만(EB21)이거나 300원 미만(EC21)인 경우
0022	입금한도 초과	입금이체(EB31)시 입금한도 초과인 경우
0031	해약계좌	해지계좌, 이관계좌, 신규취소계좌, 비활동계좌
0032	가명계좌 또는 실명미확인	실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계좌, 가명계좌
0033	잡 좌	잡좌편입계좌, 잡수입계좌
0034	법적제한계좌, 지급정지 또는 사고신고계좌	①거래정지계좌, 지급정지계좌(압류.가압류 이외의 사유), 부도등록계좌, 사망신고계좌 ②사고신고계좌(통장분실, 인감분실 등)
0035	압류.가압류 계좌	압류.가압류계좌
0036	잔액증명발급 계좌	잔액증명발급계좌, 부채증명발급계좌
0037	연체계좌 또는 지점통제계좌	연체계좌(당좌, 가계당좌), 지점자체사유에 의한 입지급통제계좌
0041	참가기관(은행)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DB읽기 오류 등)
0051	기타 오류	표준불능코드에 정의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오류
0065	법인계좌 사용불가	증권사 등은 법인계좌 및 투자자예탁금이외의 계좌는 입/출금이 불가 능 (증권사 등에서 확인하여 세트하여야 함)
0066	투자자예탁금이 아님	증권사 등은 법인계좌 및 투자자예탁금이외의 계좌는 입/출금이 불가능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는 투자자예탁금으로 이루어진 계좌만 가능함 증권사 등에서 확인하여 세트하여야 함
A011	신청일자 오류	출금이체신청내역(EB13)에서 신청일자가 없거나 자료전송일보다 이후인 경우
A016	이중신청	이미 출금이체신청등록원장에 등록된 계좌번호 및 납부자번호에 대해 여 재신청한 경우
A018	납부자번호체계 오류	특정 이용기관의 출금이체신청내역(EB13)의 납부자번호가 결제원으로 부터 사전 통지받은 납부자번호체계와 다른 경우(납부자번호체계를 검 증하는 참가기관(은행)에 한함)

## 2. 센터입력 불능코드

코 드	설 명
A012	신청구분 오류 (출금이체신청내역(EB13)에서 신청구분이 신규(1), 해지(3), 임의해지(7)이 아닌 경우)
0011	참가기관(은행)점코드 오류
0061	의뢰금액이 "0"원인 경우
0062	건당 이체금액한도 초과
0068	"통장기재내용" Field에 HEX 20(Space)보다 작은 값이 왔을 때
0075	① 출금의뢰내역(EB21, EC21)의 "출금형태"항목에 전액출금(1) 또는 부분출금가능(0, 2, 3, 4, 5, 6)이 아닌 값이 왔을 경우 ② 출금의뢰내역에 의뢰금액이 140원 미만(EB21)이거나 300원 미만(EC21)인 경우
<b>0078</b>	<b>이용기관이 E13을 전송하지 않아 EB13 신규 신청내역을 불능처리 하는 경우</b>
0081	"Record 구분" 항목이 "H", "R" 또는 "T"가 아니거나, 일련번호가 오류인 경우
0087	한글 오류 (한글코드 Field에 한글코드이외의 값이 올 경우)
0088	영문자.숫자 오류 (영.숫자코드 Field에 영.숫자코드 이외의 값이 올 경우)
0089	Space 오류 (Space Field에 Space가 아닌 값이 올 경우)
0090	All Zero 오류 (All Zero Field에 All Zero가 아닌 값이 올 경우)
0091	생년월일 대신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는 경우
0096	CMS 미참가참가기관(은행)
0098	Alpha-Numeric + Space 오류 예) 계좌번호 Field (16자리인 경우) ①1234567890123456 - (○) ②1234567890 + Space 6자리 - (○) ③1234567890 + Space + 12345 - (x)
9998	기타 오류 (표준불능코드에 정의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오류)
9999	참가기관(은행)시스템 장애

## 3. 이용기관 입력 불능코드

코 드	내 용	처리불능사유
A013	납부자번호 상이 또는 없음	출금이체신청내역(EB11)의 납부자번호가 고객원장에 없거나 해당 납부자가 자사 고객이 아닌 경우
A016	이중신청	이미 이용기관의 출금이체신청등록원장에 등록된 계좌번호 및 납부자번호에 대하여 재신청한 경우
A017	기타오류	표준불능코드에 정의되지 않은 사유로 발생한 오류

(별첨 3)

## CMS업무 담당자 선임(변경)통보서

20 . . .

○ 이용기관코드 : 99 \_\_\_\_\_

○ 기관명: \_\_\_\_\_

담당업무	담당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번호	휴대폰번호
업무총괄 담당자						
e-mail(반드시 기재요망) :						
민원처리 담당자						
e-mail(반드시 기재요망) :						
전 산 담당자						
e-mail(반드시 기재요망) :						
이용요금 담당자						
e-mail(반드시 기재요망) : 청구서 수신용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요령 : CMS 관련 업무를 1인이 담당할 경우 업무총괄담당자만 기재함

①

(\* 법인은 법인인감,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인감 날인)

\*제출방법 : FAX(02-566-6426) 또는 우편송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213번길 9(정자동) 금융결제원 CMS팀)

## CMS 이용기관 조치사항 관련 Q&A

### Q. EB11에 계좌변경 내역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CMS는 참가기관으로부터 변경내역을 수신하여 이용기관에 해지 및 신규내역을 동시에 EB11 파일로 전송합니다. 이 때 동일 납부자번호인 경우 해지내역을 먼저 수록하고 신규 내역을 아래에 수록합니다.

예) 기관코드 9999999999의 납부자번호 12345인 고객이 A계좌에서 B계좌로 자동 이체를 변경하는 경우

일련번호	기관코드	납부자번호	신청구분	취급점코드
1	9999999999	12345	3	CHNG
2	9999999999	12345	1	CHNG

\* 신청구분 3(해지), 1(신규)

- 이용기관이 계좌변경 내역을 정상 처리하는 경우 EB12에 해당 변경내역(신규 및 해지)은 수록하지 않습니다.(EB12는 불능분만 수록)
- 이용기관이 기타 사유로 변경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EB12에 변경 내역을 모두 수록(신규+해지)하여 전송하셔야 합니다.
  - 이용기관이 EB12에 해당내역을 수록하지 않는 경우 계좌변경은 정상처리 됩니다. 이 때, 이용기관의 납부자원장과 참가기관의 원장이 불일치하여 연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이용기관이 EB12에 일부 변경내역만 수록하는 경우 EB12 파일 전체가 불능처리되므로 이용기관은 꼭 변경실패한 신규 및 해지내역을 모두 수록하여야 합니다.
- 이용기관이 계좌변경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이용기관은 CMS 이용약관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EB11에 계좌변경내역 중 일부만 수록될 수 있나요?

- ☞ 참가기관 및 CMS는 계좌변경 내역을 동시에 수록하여 전송합니다. 만약 동일 납부자번호에 취급점코드가 CHNG인 신규 및 해지내역이 SET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 Q. EB11에 총 건수가 0건인 경우는 ?

- ☞ CMS는 이용기관의 EB11 파일 수신을 제고를 위해 2015. 9. 1일부터 참가기관이 접수한 신규 및 해지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0건을 수록하여 전송할 예정입니다.

## Q. EB11 정보를 이메일로 받고 있는데 담당자를 변경 할 수 있나요?

- ☞ CMS는 EB11 건수가 1건 이상인 이용기관 업무담당자에게 당일 수신해야 할 EB11 관련 정보를 이메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수신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CMS 업무 담당자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출금동의 증빙자료 전송은 CMS 이용기관만 해당 되나요?

- ☞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모든 자동이체 서비스(CMS, 지로자동이체, 펌뱅킹 등) 이용기관은 고객으로부터 출금 동의를 징구하여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Q. 서면으로 징구한 출금동의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였는데 크기가 300Kbyte를 초과하는 경우 전송이 불가능한가요?**

☞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는 모든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기관의 증빙자료 보관을 감안하여 증빙자료 형태별 최대 크기를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미지 파일 크기가 300Kbyte를 초과하는 경우 이미지 크기변경 및 해상도 변경 등을 통해 300Kbyte 미만으로 변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출금동의를 징구하는 경우 어떤 내용을 수록하여 전송해야 하나요?**

☞ 이용기관이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출금동의를 징구하는 경우 RFC2630 SignedData\*를 DER인코딩 형태로 생성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 SignedData : 출금동의원문, 전자서명값,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컨텐츠 타입이 signed-data인 ContentInfo를 구현하되, 구성은 (붙임2) 가이드라인 참조

DER인코딩 및 SignedData 등 관련 문의는 해당 보안업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이용기관이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전송하기 위해 어떠한 사항을 준비해야 하나요?**

☞ 현재는 이용기관이 출금동의를 징구하여 자체 보관하고 EB13을 통해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증빙자료 파일인 EI13을 먼저 전송하고 EB13을 전송해야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고객 1명 자동이체 등록 시 120Byte가 필요했지만 향후에는 최대 300Kbyte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시스템 용량 및 전용선 속도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원활한 증빙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 Q.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출금동의 증빙자료도 보내야 하나요?

☞ 출금동의 증빙자료(EI13)는 증빙자료 보관서비스를 본격 실시하는 시점부터 신규 고객을 등록하는 경우 전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출금동의 증빙자료 전송이 불필요 합니다.

## Q. EB11에 신청구분 코드가 임의해지(7)인 내역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EB11에 신청구분이 임의해지(7)인 내역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참가기관이 1년 이상 출금요청이 없는 출금이체 신청내역에 대해 임의해지하는 경우 (신청구분코드 : 7, 취급점코드 : 숫자4자리)

⇒ 이용기관은 해당 임의해지 내역을 확인하여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EB13 파일로 재등록

2.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증빙자료와 신청내역을 대사한 결과 증빙자료 부재 사유로 참가기관이 임의해지 하는 경우  
(신청구분코드 : 7, 취급점코드 : CNCL)

⇒ 이용기관은 해당내역 발생 시 재등록이 필요하며, 금융결제원 고객센터로 확인요청(02-1577-5500)

## Q. EI13 전송 시 중계수수료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CMS는 이용기관이 전송하는 모든 송·수신건수를 합산하여 중계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EI13 전송에 대한 중계수수료 적용여부는 별도 검토예정이며 2016. 6월 이전에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2016. 6월 이전에 전송하는 EI13은 중계수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 Q.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 관련 개발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용기관이 빌링원플러스 및 CMS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경우 해당 업체에서 관련사항을 개발하여 이용기관 앞 안내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용기관이 빌링원플러스 및 CMS 협력업체 프로그램이 아닌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전산설계서를 참고하여 직접 개발 및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용기관이 2015. 10월부터(예정) 출금동의 증빙자료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고객에 대한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하므로 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경우 빌링원플러스 및 CMS 협력업체 프로그램 사용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업체	연락처	협력업체	연락처
엔컴소프트	1566-3560	밴프로	1544-0283
더존비즈온	02-6233-0162	코리아씨엠에스	1577-3690
씨엠에스코리아	1544-5616	케이소프트	1644-8550
지에스아이코	1577-1543	CMS메카	1544-4842
티앤비소프트	1600-2570	신안소프트	1566-5767
아인티피에스	1544-6303	휴먼소프트웨어	02-583-0425
TAX CMS	031-380-4250	셀파시스템	051-639-0100
고려CMS	02-457-9108	웹캐시	02-3779-2920
엔지오웨어(나눔과셈)	02-565-5886	나눔아이씨티	02-749-3466
스마트레이저(도움과나눔)	070-4010-8766	대은소프트	1566-5788
이프뱅크코리아	02-2057-4011	금호데이터	054-975-8819
비즈빌드	02-831-0466	포스텍코리아	02-838-5117
네오디시전스	02-762-1162	MYCMS	02-304-2044
엔컴주식회사	02-336-0980	에스앤비컬처	02-2215-5373
크레비스파트너스	02-569-2431	아이피포네트워크	070-7001-0981
핑 거	070-8224-8763	드림씨엠에스	070-4801-4487
사회보장정보원	02-6360-6538	빌링원플러스	1577-5500

(붙임 2)

# 출금동의 증빙자료(티13) 전산설계서

## 1. 파일 Layout

### 가. 파일 설명

파일명 : EI13MMDD (MMDD : 신청일자)

\* 출금이체 신청내역(EB13) 파일명의 MMDD와 동일하게 SET

자료 흐름 : 이용기관 → 센터 → 자동이체정보 통합관리시스템

### 나. RECORD 길이 : 1024 BYTE

### 다. 각 RECORD별 LAYOUT

Header Record

항번	항 목	MODE	LENGTH	비 고
1	업무구분코드	AN	6	'AE1112'
2	Record 구분	N	2	'11'
3	일련번호	N	7	'0000000'
4	신청일	N	8	YYYYMMDD (FILE명의 MMDD와 동일한 날짜)
5	이용기관코드	AN	20	이용기관식별코드(10자리)
6	총 증빙자료 개수	N	7	
7	FILLER	A	974	SPACE

(주) “6. 총 증빙자료 개수” : Data Record내에 수록된 총 증빙자료 개수

□ Data Record

항번	항 목	MODE	LENGTH	비 고
1	업무구분코드	AN	6	'AE1112'
2	Record 구분	N	2	'22'
3	일련번호	N	7	'0000001' ~ '9999998'
4	FILLER	AN	10	
5	이용기관코드	AN	20	이용기관식별코드(10자리)
6	납부자번호	AN	30	
7	참가기관(은행) 코드	N	3	참가기관(은행) 코드로 대표코드 사용 권장
8	계좌번호	AN	20	'-'는 생략
9	신청일	N	8	YYYYMMDD
10	증빙자료 구분	N	1	'1'(서면), '2'(전자문서-공인전자서명), '3'(전자문서-일반전자서명), '4'(녹취), '5'(ARS)
11	증빙자료 확장자	AN	5	대소문자 무관
12	증빙자료 길이	N	7	13.증빙자료 Data의 실제 길이 (단위 : Byte)
13	증빙자료 Data	X	nnnn	실 증빙자료 Data (Binary 모드)
14	FILLER	A	nnnn	

(주) "6~9번 납부자번호, 참가기관(은행) 코드, 계좌번호, 신청일"

- 출금이체 신청내역(EB13)의 항목과 동일한 값 SET
- 신청내역(EB13)과 증빙자료 내역(EI13)의 대사를 위한 매칭KEY로 활용

"11번.증빙자료 확장자"

- 증빙자료 구분별 확장자 이외의 자료 및 크기를 초과한 자료는 오류 처리

증빙자료 구분	증빙자료 확장자	최대 크기 (KByte)
'1'(서면)	jpg, jpeg, gif, tif	300
'2'(전자문서-공인전자서명)	der (RFC 2630 SignedData <sup>※</sup> 를 DER인코딩 형태로 생성)	5
'3'(전자문서-일반전자서명)	jpg, jpeg, gif, tif	300
'4'(녹취)	mp3, wav	200
'5'(ARS)	mp3, wav	200

※ SignedData : 출금이체원문, 전자서명값,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콘텐츠 타입이 signed-data인 ContentInfo를 구현하되, signed-data 구성은 다음을 참고

필드		내용
version		버전정보
digestAlgorithms		데이터 해쉬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contentinfo	contentType	서명대상 원본 데이터 유형
	content	서명대상 원본 데이터 내용
certificates		서명에 사용한 인증서
crls (optional)		(사용하지 않음)
signerInfo	version	버전정보
	IssuerAndSerialNumber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발급자 DN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일련번호
	digestAlgorithms	데이터 해쉬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authenticatedAttributes (optional)	시간정보 등 포함
	digestEncryptionAlgorithm	데이터 서명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encryptedDigest	전자서명된 결과값
	unauthenticatedAttributes (optional)	(사용하지 않음)

전자서명 생성 시에는 해쉬 알고리즘은 SHA(256bits 이상), 서명 알고리즘은 RSA를 사용

#### "14.FILLER"

- 식별정보(1.업무구분코드 ~ 12.증빙자료 길이, 119Byte)와 동의정보(13.증빙자료 Data)를 포함하여 1개 Record가 1024단위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FILLER 필드의 길이를 "0~1023"으로 조정하여 SPACE를 SET

#### □ Trailer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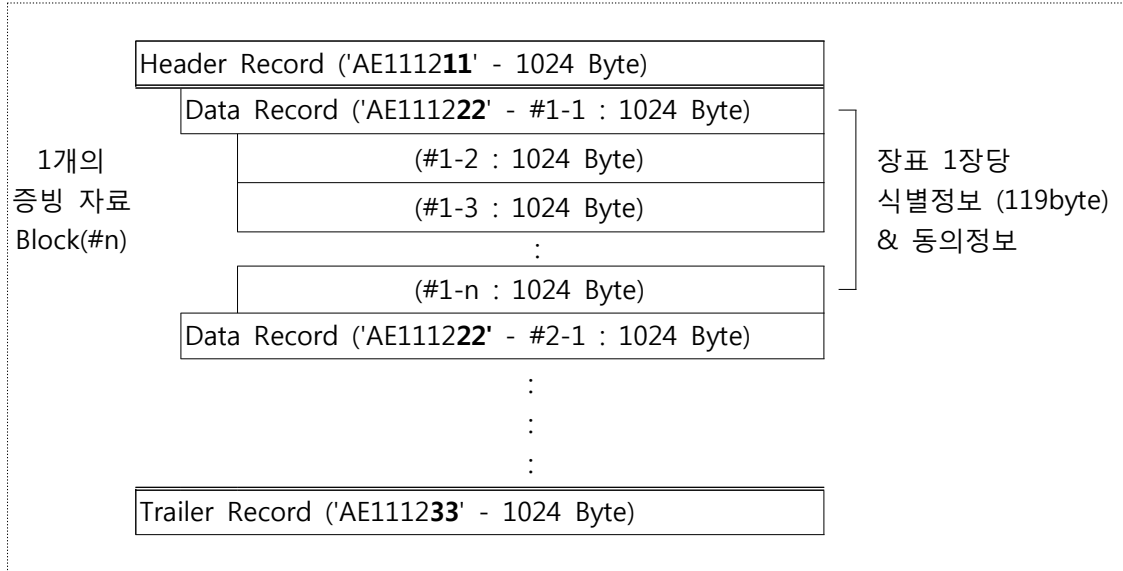
항번	항 목	MODE	LENGTH	비 고
1	업무구분코드	AN	6	'AE1112'
2	Record 구분	N	2	'33'
3	일련 번호	N	7	'9999999'
4	이용기관코드	AN	20	이용기관식별번호(10자리)
5	총 Data Record 수	N	7	Header Record의 "6.총 증빙자료 개수"와 동일
6	총 Data Block 수	N	10	1024 Byte 단위의 Record 수
7	FILLER	A	972	SPACE

#### (주) "6. 총 Data Block 수"

- Data Record(Record 구분 '22')를 구성하는 1024 Byte Block의 총 개수  
→ 파일크기를 1024로 나눈값에 Header, Trailer Record 수를 제외 (파일크기/1024 - 2)

## 2. 증빙자료 파일 구성 방법

□ 기본 구성은 아래와 같이 Header, Trailer (각 1 개) 및 Data Record로 구성



□ 각 Data Record (Record 구분 : '22')는 1개의 증빙자료 정보를 수록

– 증빙자료는 식별정보와 동의정보로 구성

- 식별정보 : “1.업무구분코드” ~ “12.증빙자료길이” (119 byte)
- 동의정보 : “13.증빙자료 Data“

– Data Record의 식별정보와 뒤따라 덧붙여지는 동의정보 전체를 1024 Byte로 나누어 파일을 작성 (동의정보 뒷부분은 1024단위가 되도록 FILLER 필드의 길이를 계산하여 SPACE처리)



(붙임 3)

## 출금동의 증빙자료 가이드라인

### □ 출금동의의 방법\*

- 서 면
- 녹 취
- 음성응답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이하 'ARS')
- 전자문서\*\*
  - 공인전자서명한 문서
  -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일반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 전자문서 생성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 가능
    - 전자문서의 고객 앞 전송 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 동의방법의 근거법령 : 관련법규(5페이지) 참조

**\*\*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의 차이**

공인전자서명	일반전자서명
법적근거 :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	법적근거 :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 -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유일성 - 서명 당시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의 지배, 관리 - 전자서명 후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 확인 - 전자서명 후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 확인	- 서명자를 확인하고 -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 동의자료 내 필수정보

구 분	고 객 → 이용기관	이용기관 → CMS(EI13)
공 통 사 항	서비스종류	서비스종류 <sup>1)</sup>
	이용기관명	이용기관코드 <sup>2)</sup>
	요금출금은행	요금출금은행 <sup>3)</sup>
	출금계좌번호	출금계좌번호 <sup>4)</sup>
개 별 사 항	예금주 생년월일	납부자번호 <sup>5)</sup>
	출금계좌 예금주명	
	예금주 날인 또는 서명	신규신청일자 <sup>6)</sup>
	(예금주 ≠신청인) 신청인명 예금주와의 관계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증빙자료 식별값 <sup>7)</sup>

1) 서비스종류 : CMS

2) 이용기관 코드

- 99로 시작하는 10자리 숫자

3) 납부자번호 : 출금이체 신청고객의 납부자번호 (특수문자 사용 불가)

4) 출금은행 : 출금은행(고객계좌은행)코드 3자리 숫자

5) 계좌번호 : 20byte 이내 숫자 ('-'등은 삭제)

6) 신규 신청일자 : YYYYMMDD형태로 8자리 숫자

\* 이용기관이 접수하는 신규 신청에 한해 증빙자료 전송

7) 증빙자료 식별값 : 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출금이체 신청내역과 이용기관으로부터 수신한 증빙자료를 매핑할 수 있는 고유 값

※ 중계기관 앞 송신하는 자동납부 동의자료 내 상기 필수포함정보 이외의 자동납부 동의와 무관한 개인정보 및 상담내역(녹취/ARS)을 포함해서는 안 됨.

#### □ 출금동의 증빙자료 정의 및 예시

○ 서 면 : 납부자가 이용기관의 출금이체 신청서에 맞춰서 작성한 문서로 출금동의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각종 문서를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파일

예시) 서비스신청서, 가입신청서, 고객동의서 등의 스캔 및 디지털사진 이미지 등

○ 녹 취 : 납부자가 이용기관의 요청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한 질문과 답변 내용, 출금동의 여부 질문 및 답변이 수록되어 있는 음성 녹음 파일

예시) 고객센터에서 본인 이름, 생년월일 등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후 이에 대해 답변하는 내용 및 자동이체 관련 은행명, 계좌번호 등 출금동의 여부에 대한 답변 음성

○ A R S : 이용기관 고객센터의 음성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자 본인 확인을 거치고, 출금이체 관련된 ARS의 음성 안내에 따라 고객이 출금동의한 음성 정보

예시) ARS시스템 에서 출금이체 신청 당사자에 대한 본인인증(실명번호

입력 등) 후 출금이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내역 확인 후 이에 동의 혹은 인입하는 음성

○ 전자문서

－ (공인전자서명) 온라인을 통해 신청한 출금이체 정보(출금동의 원문)를 본인 (예금주)의 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한 파일

예시) 납부자 본인이 인터넷 웹 사이트 등에서 직접 자동이체에 대해 동의하고 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서명한 데이터

－ (일반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제1항2호 가.~라. 목 의 요건을 구비한 출금동의 전자서명을 한 이미지

예시) 납부자가 스마트패드, 앱 등에서 직접 자동이체에 동의하고 해당 정보통신기기 등에 자필 서명한 내역 (보험 전자서명시스템 등)

□ 증빙자료 형태 및 용량

○ 서 면 : jpg, jpeg, gif, tif (300kb 이내)

○ 녹 취 : MP3, WAV 등 음성파일 (200kb 이내)

○ A R S : MP3, WAV 등 음성파일 (200kb 이내)

○ 전자문서 : (일반전자서명) jpg, jpeg, gif, tif (300kb 이내)

(공인전자서명) der (5kb 이내)

(RFC2630 SignedData\*를 DER인코딩 형태로 생성)

\* SignedData : 출금동의원문, 전자서명값, 공인인증서 등을 포함하며, 콘텐츠 타입이 signed-data인 ContentInfo를 구현하되, 구성은 다음을 참고

\* SignedData 구성형식 (예시)

필드		내용
version		버전정보
digestAlgorithms		데이터 해쉬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contentinfo	contentType	서명대상 원본 데이터 유형
	content	서명대상 원본 데이터 내용
certificates		서명에 사용한 인증서
crls (optional)		(사용하지 않음)
signerInfo	version	버전정보
	IssuerAndSerialNumber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발급자 DN 서명에 사용된 인증서의 일련번호
	digestAlgorithms	데이터 해쉬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authenticatedAttributes (optional)	시간정보 등 포함
	digestEncryptionAlgorithm	데이터 서명에 사용된 알고리즘 ID
	encryptedDigest	전자서명된 결과값
	unauthenticatedAttributes (optional)	(사용하지 않음)

※ 전자서명 생성 시 해쉬알고리즘은 SHA(256bits 이상), 서명 알고리즘은 RSA를 사용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意的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인과 정한 약정에 따라 동意的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동意的 철회방법 및 절차와 약정에 관한 사항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0조(출금동意的 방법)】**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녹취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자동납부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전자적 방법으로 출금의 동 의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하는 방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조(추심이체 출금 동意的 방법 등)】**① 시행령 제10조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전자문서를 말한다

1. 공인전자서명한 전자문서
2.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이 구비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
  - 가. 서명 전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
  - 나. 전자문서가 생성된 이후 서명자가 지급인 본인임을 확인 가능
  - 다.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에 대한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
  - 라. 전자문서를 고객에게 전송한 이후 고객이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부여
3. 삭제 <2015.3.18.>

② 시행령 제1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화 녹취
2.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 (후략)